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소방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방자동차의 운행 기록, 운행 경로, 운전자의 행동 등을 체계적인 데이터 형태로 분석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신속하고 안전한 운행을 뒷받침하고,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수집·저장·통합·분석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847호, 2022.4.26. 일부개정, 2023.4.27.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 범위를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는 소방자동차 범위와 관련하여 법 제21조의3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를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른 것으로 정하고자 함(안 제7조의15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0.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15(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 범위) 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소방자동차는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른 것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펌프차
2. 소방물탱크차
3. 무인방수차
4. 소방화학차
5. 화생방 대응차
6. 소방고가차(高架車)
7. 소형사다리차
8. 재난지휘차
9. 구조차
10. 구급차
11. 화재조사차

12. 조명배연차

13. 그 밖에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자동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조의15(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 범위) 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소방자동차는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른 것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소방펌프차</u> <u>2. 소방물탱크차</u> <u>3. 무인방수차</u> <u>4. 소방화학차</u> <u>5. 화생방 대응차</u> <u>6. 소방고가차(高架車)</u> <u>7. 소형사다리차</u> <u>8. 재난지휘차</u> <u>9. 구조차</u> <u>10. 구급차</u> <u>11. 화재조사차</u> <u>12. 조명배연차</u> <u>13. 그 밖에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자동차</u>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	
연 락 처	(044) 205 - 7416